

문서번호	GCH-시행세칙-09	장학운영시행세칙	총장
제정일자	2000.03.01.		
개정일자	2022.02.03.		
면 수	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시행세칙은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품행이 방정하며, 학생회 운영업무 및 학생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향학의욕과 재능이 우수하면서도 경제적 사정으로 부득이 학업을 계속하기가 곤란한 경북보건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학생에게 등록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 학업을 계속하게 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훌륭한 인재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대학 장학금 지급과 선발기준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본 시행세칙을 따른다. 본 시행세칙에서 별도의 규정이라 함은 각종 장학금 지급단체의 특정한 지급조건을 말한다.

제3조(자격) 본 대학의 학비감면 대상자 및 장학생으로 선발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
2.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3. 기초생활수급권자이거나 가정형편이 곤란한 자로서, 성적이 양호하고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개정 2010.11.25]
4. [삭제 2013.03.01.]
5. 국가유공자 및 자녀
6. 학생간부로 승인 또는 임명된 자
7.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자

제4조(자격상실) 학비감면 및 장학금 수혜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휴학(성적 우수 장학금 대상자로서 휴학 전 등록자는 제외)[개정 2010.11.25]
2. 근신 이상의 징계
3. 학업성적 또는 학업태도 불량
4. 유공학생으로 승인 또는 임명되었으나 직무에 태만할 경우
5. 계출없이 1개월 이상 결석한 자
6. 학기 성적이 C⁰미만인 자(공로장학금의 경우에 해당)[개정 2016.03.01.]
7. 총장이 명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한 자

제2장 장학심의위원회

문서번호	GCH-시행세칙-09	장학운영시행세칙	총장
제정일자	2000.03.01.		
개정일자	2022.02.03.		
면 수	15		

제5조(목적) 본 대학의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장학심의위원회를 둔다.

제6조(구성및운영) 장학심의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11.25]

1. 장학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외에 위원 7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학사운영처장이 되며, 심의위원은 본 대학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개정 2019.10.23.]
3. 장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10.23.]
4.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5. 장학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을 경우 학사운영위원회가 이를 대신하며, 이 경우 장학 담당 직원을 구성원으로 포함한다.[개정 2019.10.23.]

제7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가진다.

1. 장학금에 관한 규정 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장학금 지급에 관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개정 2019.10.23.]
3. 장학생 선발에 관한 사항
4. 장학업무와 관련된 제반 사항

② 위원회의 결의사항은 위원회 회의에 붙여 가부를 결정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 결정권은 위원장이 가진다. 단, 위원회 개최가 원활하지 못할 경우 심의 및 의결을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회의소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시로 이를 소집한다.

제3장 장학금 종류 및 지급사항

제9조(장학금종류) ① 본 대학의 장학금은 교내장학금과 교외장학금으로 구분한다.

② 교내장학금에는 전체수석장학금, S-Class장학금, A-Class장학금, B-Class장학금, C-Class장학금, 가족장학금, 연계교육장학금, 자격증장학금, 만학도장학금(간호학과 제외), 보훈장학금, 자기계발장학금, 주부사랑장학금(뷰티디자인과/보건복지과),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성적우수장학금, 사랑장학금, 근로장학금, 공로장학금, 주경야독 장학금, 철도특별장학금, 글로벌리더장학금, 결혼이민여성장학금, 해외교환학생장학금(간호학과), 학업성적향상장학금(간호학과), 전과특별장학금, 다문화가족사랑장학금, 장애인복지장학금, 장애인도우미장학금, 탈북가족사랑장학금, GCH마일리지장학금, 황악장학금, 창업장려장학금, 창업지원장학금, 정시지원특별장학금, 미용

문서번호	GCH-시행세칙-09	장학운영시행세칙	총장
제정일자	2000.03.01.		
개정일자	2022.02.03.		
면 수	15		

국가기술자격장학금, 신입생특별장학금, 김천사랑장학금 리턴장학금, 학과장추천장학금, 가계곤란장학금, 전공심화과정장학금 등이 있으며, 지급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하여 시행한다.[개정 2010.11.25, 2011.12.01, 2012.03.01., 2012.10.10., 2013.03.01., 2013.09.01., 2014.03.01., 2015.09.01., 2016.03.01., 2017.08.28., 2018.08.24., 2019.10.23., 2020.08.13., 2021.08.19., 2022.02.03]

장학명	장학생 선발기준	장학혜택
전체수석장학금	신입생 입학성적 전체수석자	입학 시 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급 재학기간동안 수업료 전액 지급 평점 4.0 미만이면 자격 영구상실
S-Class장학금	정시모집 합격자로서 수능 3개 영역(국어, 영어, 수학) 중 2개 영역 이상 1등급인 자	입학 시 입학금, 수업료 전액+ 학습장려금 300만원 지급 매학기 평점 4.0이상 시 수업료 전액 및 학습장려금 300만원 지급(최대 8개 학기)
A-Class장학금	정시모집 합격자로서 수능 3개 영역(국어, 영어, 수학) 중 2개 영역 이상 2등급인 자	입학 시 입학금, 수업료 전액+ 학습장려금 200만원 지급 매학기 평점 4.0이상 시 수업료 전액 및 학습장려금 200만원 지급(최대 8개 학기)
B-Class장학금	1. 정시모집 합격자 - 수능 3개 영역(국어, 영어, 수학) 중 2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인 자 2. 수시모집 합격자 - 일반고 졸업자 : 학생부 2등급 이내 - 검정고시 평균점수 96점 이상	입학 시 입학금, 수업료 전액 매학기 평점 4.0이상 시 수업료 전액 (최대 4개 학기)
C-Class장학금	1. 정시모집 합격자 - 수능 3개 영역(국어, 영어, 수학) 중 2개 영역 이상 4등급 이내인 자 2. 수시모집 합격자 - 일반고 졸업자 : 학생부 3등급 이내 - 특성화고 졸업자 : 학생부 2등급 이내 - 검정고시 평균점수 90점 이상	입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가족장학금	부모형제 중 본 대학 졸업생이나 재학생이 있는 경우의 1인	입학 시 일정금액 지급
연계교육장학금	연계고교의 학생 중 연계교육학생(추천서 작성)으로 추천 입학한 학생(기준인원 미만 등록)	입학 시 일정금액 지급
	연계고교의 학생 중 연계교육학생(추천서 작성)으로 추천 입학한 학생(기준인원 이상 등록)	입학 시 수업료의 30% 지급 재학기간동안 수업료의 30% 지급
자격증장학금	각 학과(계열)에서 요구하는 자격증을 지니고 입학한 자 각 학과 해당 자격증은 분항 5호 참조	입학 시 일정금액 지급
만학도장학금A	만 26세(입학년도 기준) 이상의 나이로 부	입학 시 수업료의 30% 지급

문서번호	GCH-시행세칙-09	장학운영시행세칙	총장
제정일자	2000.03.01.		
개정일자	2022.02.03.		
면 수	15		

	티디자인과에 입학하는 자	재학기간동안 수업료의 30% 지급
만학도장장학금B	만 26세(입학년도 기준) 이상의 나이로 보건의복지과 및 작업치료과에 입학하는 자	입학 시 입학금 및 수업료의 전액 지급 재학기간동안 수업료의 30% 지급
보훈장학금	국가보훈청에서 인정하는 국가유공자 또는 그 자녀로서 매학기 신청학점의 평균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자	본인 또는 자녀의 경우 재학기간동안 수업료의 100% 지급
자기계발장학금 (학과별 선택)	자기계발을 하고자 하는 신입생	입학 시 일정금액 지급
주부사랑장학금	주부로서 작업치료과, 뷰티디자인과, 보건복지과(주간)에 신입학한 자	입학 시 수업료의 50% 지급 재학기간동안 수업료의 50% 지급
외국인 유학생 장학금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입학한 외국인	입학 시 입학금 전액 및 수업료 30% 지급, 재학기간동안 수업료 30% 지급
성적우수장학금 A	재학생 중 학업성적 우수자	수업료 전액 지급
성적우수장학금 B	재학생 중 학업성적 우수자	수업료의 70% 지급
성적우수장학금 C	재학생 중 학업성적 우수자	수업료의 50% 지급
성적우수장학금 D	재학생 중 학업성적 우수자	수업료의 30% 지급
성적우수장학금 E	재학생 중 학업성적 우수자	수업료의 15% 지급
사랑장학금	<o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재학생 해당 학기 산정 완료된 소득분위 0~7분위 이내 저소득층 해당자 국가장학금I유형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 통과자 직전학기 백분위 성적 평균 80점 이상 기준 통과자 상기 1, 2, 3호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소득분위 하위자를 우선하여 해당 장학금의 예산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선발 위의 기준으로 선발된 수혜자 전원에게 장학금 지급 후 해당 장학예산이 남는 경우에는 성적 기준을 백분위 성적 평균 70점 이상으로 하향 조정해서 추가 수혜자를 선발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분위 별 차등 지급을 원칙으로 하여 국가장학금II유형운영시행세칙의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기준과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여 지급 단, 선발자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 후 해당 장학금 예산이 남을 경우 재원 내에서 저소득 소득분위 순으로 기 지급 사랑장학금 외에 소득분위별 지급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중복하여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소득분위 동순위자 내에서의 추가 지원 우선순위는 성적이 높은 자, 이수학점이 많은 자를 우선한다
황약장학금	모범적인 학생 및 학교의 명예를 선양한 학생 중 학사운영처장의 추천을 받아 총장이 그 타당성을 인정한 자	일정 금액 지급. 등록금 한도 내에서 이중수혜가능
근로장학금	학업성적이 양호하고 가계경제사정이 곤란한 자로서 대학/학과/기숙사 업무 보조자	일정금액 지급
공로장학금	총학생회장, 대의원회 의장	수업료 전액 지급
	부총학생회장, 대의원회 부의장	수업료의 70% 지급
	총학생회 집행부 부서장, 학회장, 방송국장, 학보사국장, 동아리 연합회장	수업료의 50% 지급
	부학회장	수업료의 30% 지급

문서번호	GCH-시행세칙-09	장학운영시행세칙	총장
제정일자	2000.03.01.		
개정일자	2022.02.03.		
면 수	15		

	학급학생장	수업료의 20% 지급
	총학생회 집행부 차장, 방송국부국장, 학보사부국장	수업료의 10% 지급
주경야독장학금	고등학교 졸업 후 3년 이상 경과자 또는 산업체 종사자로서 야간교육과정 입학자 및 수강자.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자, 검정고시 합격자로 만23세 이상 야간 입학생	입학 시 수업료의 30% 지급 재학기간동안 수업료의 30% 지급
글로벌리더장학금	입학 직전 년도 또는 재학기간 동안 취득한 토익성적이 우수한 학생	취득한 토익성적에 따라 일정금액 지급(제14조 지급방법 참조)
결혼이민여성 장학금	결혼 후 2년 이상 국내 거주자	재학기간동안 수업료의 50% 지급
철도특별장학금 [신설 2011.12.01]	철도경영과 학생으로서 재학기간 중 철도관련 공사시험에 합격한 자	최종합격학 학기를 포함하여 잔여 학기 수업료 전액 지급
해외교환학생 장학금	간호학과 성적우수자 약간명	한 학기 해외어학 연수비용 일부 지원
학업성적향상장학금	간호학과 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과 비교하여 평점 0.3 이상 향상된 자	향상성적별 일정금액 지급
전과특별장학금	소속 학과의 폐과로 인해 타과로 전과하는 자	기납부한 수업료에 해당하는 입학금, 수업료 전액 지원
다문화가족 사랑 장학금	다문화가족 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	일정금액 지급
장애인복지 장학금	장애등급을 가진 재학생	등급별 차등 일정금액 지급
장애인도우미 장학금	장애학생이 대학생화에 도움을 필요로 할 경우 학과장의 추천으로 장애학생의 도우미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일정금액 지급
탈북가족 사랑장학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그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	일정금액 지급
GCH마일리지 장학금	영역별 해당하는 프로그램에 참가하거나 우수자로 선정된 학생들에게 마일리지를 지급하여 적립할 수 있게 하고 적립된 마일리지에 해당하는 금액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장학금	점수별 해당 장학금 지급
창업장려장학금	창업준비 활동을 활발히 한 학생으로서 취창업지원부서의 장학생 선발요강에 의하여 일정한 자격의 창업준비활동을 인정받아 선발된 재학생	평가 점수에 의한 등급별 일정금액 차등 지급
창업지원장학금	재학 중 본인이 창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취창업지원부서의 장학생 선발요강에 의하여 심사 선발된 재학생	일정금액 지급
정시지원 특별장학금	정시모집 활성화를 위해 총장이 사전에 승인한 학과의 정시모집에 합격한 신입학생	입학 시 일정금액 지급

문서번호	GCH-시행세칙-09	장학운영시행세칙	총장
제정일자	2000.03.01.		
개정일자	2022.02.03.		
면 수	15		

미용국가 기술자격 장학금	뷰티디자인과 신입생으로 미용사 국가자격증(일반, 피부, 메이크업, 네일) 중 1개 이상 보유자	1개 보유자 - 입학 시 수업료 100만원 지급 2개 보유자 - 입학 시 수업료 150만원 지급 3개 보유자-입학 시 입학금 및 1개 학기 수업료 전액 4개 보유자-입학 시 입학금 및 1년(2개 학기) 수업료 전액
신입생특별장학금	수시 및 정시모집 정원내 및 정원외 전형에 지원하여 최초합격한 자	입학 시 100만원 지급
	수시 및 정시모집 정원내 및 정원외 전형에 지원하여 추가합격한 자	입학 시 70만원 지급
김천사랑장학금	수시 및 정시모집 합격자 중 김천지역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입학 시 150만원 지급
리턴장학금	우리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자퇴(제적) 한 자로서 간호학과 이외의 학과에 신입학한 자	2년간(4개 학기) 등록금 전액 지급
학과장추천장학금	우리대학 작업치료과, 뷰티디자인과, 보건복지과(주간)에 신입학한 자로서 학과장의 추천을 받은자(입학정원의 20%이내)	재학기간동안 등록금 전액 지급 (단, 매학기 평균평점 3.5점 이상 시 계속지원)
가계곤란장학금	작업치료과, 뷰티디자인과, 보건복지과 신입생 및 재학생 중 소득분위 1분위 이내인 자	1.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 매학기 생활비 100만원 지급 2. 1분위자 : 매학기 생활비 50만원 지급
전공심화과정 장학금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한 자	입학 시 수업료의 30% 지급 재학기간동안 수업료의 30% 지급

1. 성적우수장학금의 등급별 대상 인원은 학과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다.[개정 2010.11.25., 2021.08.19]
2. 연계교육장학금의 기준인원은 관외고등학교 협약학과는 5명, 관내고등학교 협약학과는 5명(재적인원 40명 미만), 10명(재적인원(40명 이상) 이다. 관내고등학교는 김천시에 소재하는 고등학교를 의미한다.[개정 2010.11.25., 2019.10.23.]
3. [삭제 2015.09.01.]
4. [삭제 2015.09.01.]
5. 학과별 자격증장학금 해당 자격증[개정 2010.11.25., 2012.10.10., 2013.03.01., 2015.09.01., 2017.08.28. 2018.08.24., 2019.10.23., 2020.08.13., 2021.08.19.]

학과	자격증장학금 해당 자격증
뷰티디자인과	두피모발관리사, 네일아트, 컬러리스트, 분장메이크업 중 1개 이상 소지자
보건복지과	공무원임용 시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는 각종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철도경영과	철도공사임용 시 가산점을 부여받을 수 있는 각종 자격증 중 1개 이상 소지자

6. [삭제 2015.09.01.]
7. 학업성적향상장학금은 GCH마일리지장학제도 시행 시 해당 항목이 마일리지 지급 항목

문서번호	GCH-시행세칙-09	장학운영시행세칙	총장
제정일자	2000.03.01.		
개정일자	2022.02.03.		
면 수	15		

으로 포함될 경우 별도 선발하지 아니한다.[신설 2016.03.01.]

8. 창업장려장학금 및 창업지원장학금의 장학생 선발 모집요강은 창업지원부서에서 모집시기, 선발기준, 장학금액 지급기준 등을 장학부서와 협의하여 엄격한 기준을 정하고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시행한다.[개정 2017.08.28., 2019.10.23.]
9. S-Class장학금, A-Class장학금, B-Class장학금, C-Class장학금, 신입생특별장학금, 김천사랑장학금은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에 한하여 지급하며, 등록금 납부기간까지 소득분위가 확정되지 않은 학생은 입학 후 별도지급한다.[신설 2021.08.19.]

③ 교외장학금은 본 대학의 교육을 위하여 국가, 외부의 장학기관, 사회단체, 개인이 지급 또는 위탁한 재원에서 지급하는 장학금으로,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하여 시행한다.[개정 2010.11.25, 2011.12.01., 2012.10.10., 2013.03.01., 2015.09.01., 2016.03.01., 2020.02.27.]

장학명	장학생 선발기준	장학혜택																				
국가장학금 I 유형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I 유형 시행규정에 따름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I 유형 운영시행규정에 따름																				
국가장학금 II 유형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II 유형 시행규정에 따름	소득계층별 수업료의 일정비율 학기별 지급 ※ 학기별 장학금 비율(수업료): <table border="1" style="margin: 5px 0;"> <tr> <td>분위</td> <td>0</td> <td>1</td> <td>2</td> <td>3</td> <td>4</td> <td>5</td> <td>6</td> <td>7</td> <td>8</td> </tr> <tr> <td>금액</td> <td>20%</td> <td>18%</td> <td>16%</td> <td>14%</td> <td>12%</td> <td>10%</td> <td>8%</td> <td></td> <td></td> </tr> </table> ※ 해당 장학금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급 ※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장학금 II 유형 시행규정에 따름	분위	0	1	2	3	4	5	6	7	8	금액	20%	18%	16%	14%	12%	10%	8%		
분위	0	1	2	3	4	5	6	7	8													
금액	20%	18%	16%	14%	12%	10%	8%															
4050성인학습자 장학금	만40세 이상(입학년도 기준) 입학한 성인학습자(일부 학과에 한함)	입학 시 입학금 전액 및 수업료의 45%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근로장학금 ◦ 고속도로장학금 ◦ 디딤돌장학금 ◦ 김천시인재양성장학금 ◦ 김천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 ◦ 상공회의소장학재단장학금 ◦ 사랑드림장학사업 - 삼성 ◦ 국가보훈장학금 ◦ 아산사회복지재단장학금 ◦ 쌍용곰두리장학금 ◦ 대구은행장학금 ◦ 춘향당서점기탁장학금 ◦ 군부사관장학금 ◦ 새터민장학금 ◦ 농촌희망재단장학금 ◦ 사랑나눔장학금 ◦ 김천시·신한은행장학금 ◦ 충동창회기탁장학금 ◦ 국가전문대학성적우수장학금 																						

1. 4050성인학습자장학금은 “대학중심의 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될 경우에만 지급하고, 장학금 지급대상은 대학 자체 기준에 따라 선발하며, 수업료內에서 타 장학금과 중복지급이 가능하다.[신설 2011.12.01, 개정 2012.10.10.]
2. 상기 모든 교외장학금은 당해년도 기탁금액에 대하여 당해년도 장학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신설 2016.03.01.]

④ 장학금액 중 일정금액의 경우 매년 내부결재에 의해 정해지며, 해당년도 별도결재가 없을 경우 전년도 결재를 따른다.[개정 2010.11.25]

⑤ [삭제 2016.03.01.]

제4장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방법

문서번호	GCH-시행세칙-09	장학운영시행세칙	총장
제정일자	2000.03.01.		
개정일자	2022.02.03.		
면 수	15		

제10조(선발원칙) 본 대학 장학생의 선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11.25]

1. 장학생의 선발은 장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명단을 확정·발표한다.
2. 장학생 선발규정을 별도로 정한 경우의 교내장학금 및 교외장학금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다.
3. 교외 장학금의 경우 지급기관(단체, 개인)에서 장학생을 지정하여 장학금을 기부한 경우에는 지급기관의 의사(방침, 규정)에 따른다.
4. 교외 장학금 지급기관에서 장학생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 및 기타 교외장학금 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른다.[개정 2019.10.23.]

제11조(동점자처리기준) 본 대학 장학 대상자들의 학급별 성적이 동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1. 실질 평균이 높은 자를 우선으로 한다.
2. 총득점이 많은 자를 우선으로 한다.
3. 이수과목의 학점 수가 많은 자를 우선으로 한다.

제12조(장학금이중수혜제한) ① 장학금은 교내외를 막론하고 해당학기 수업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복수혜를 금지함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학기의 수업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복수혜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0.11.25., 2011.12.01., 2020.12.03.]

1. [삭제 2020.12.03]
2. [삭제 2020.12.03]
3. [삭제 2020.12.03]
4. [삭제 2020.12.03]
5. [삭제 2020.12.03]
6. [삭제 2020.12.03]
7. [삭제 2020.12.03]
8. [삭제 2020.12.03]
9. [삭제 2020.12.03.]
10. [삭제 2021.08.19.]

② 본조 ①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혜한 장학금이 수업료를 초과하더라도 중복수혜를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17.08.28., 2020.12.03.]

1. 근로장학금[신설 2020.12.03]
2. 장애인도우미장학금[신설 2020.12.03]
3. 공로장학금[신설 2020.12.03]
4. 창업지원장학금[신설 2020.12.03]
5. 발전기금 및 지정기부금에 의한 장학금[신설 2020.12.03]

문서번호	GCH-시행세칙-09	장학운영시행세칙	총장
제정일자	2000.03.01.		
개정일자	2022.02.03.		
면 수	15		

6. 1회성 포상성격의 상금 또는 지원금[신설 2020.12.03]

7. 기타 총장이 예외로 인정하는 경우[신설 2020.12.03]

③ 연계교육장학금, 주부사랑장학금, 만학도장학금, 주경야독장학금, 체육특기자장학금, 수시지원장학금, 자기계발장학금, 공학계열육성장학금, 정시지원특별장학금, 미용국가기술자격장학금은 중복지급이 되지 않는다.[개정 2010.11.25., 2012.10.10., 2017.08.28. 2018.08.24., 2021.02.18., 2021.08.19]

④ 주경야독장학금 대상자는 ①항에도 불구하고 가계곤란에 의해 선발되는 장학금(교내사랑장학금, 국가저소득지원 장학금) 및 장애인복지장학금을 제외한 타 장학금의 중복 수혜를 금지한다.

⑤ 외국인유학생 장학금 대상자는 타 장학금의 중복 수혜를 금지한다. 단 성적장학금과 외국인유학생 장학금 중 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장학금을 선택할 수 있다.[신설 2011.12.01]

⑥ 교·내외 장학금을 중복하여 신청할 경우 제12조의 ①, ②, ③, ④항의 내용을 기준으로 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장학금을 선택할 수 있다.[개정 2010.11.25., 2011.12.01., 2014.03.01., 2019.10.23.]

⑦ 중복이 가능한 장학금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교내특별장학금, 교외장학금(계속자), 국가저소득층지원장학금, 교외장학금(신규자), 교내사랑장학금, 교내성적우수장학금 순으로 선발한다.[신설 2012.10.10]

제13조(장학금신청서류) ① 장학 대상자가 장학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012.10.10]

2. 국가보훈대상자

(1) 국가보훈대상자 증명서 1부

(2) [삭제 2012.10.10]

3. [삭제 2012.04.01]

4. 자격증장학금

(1) 자격증장학금 신청서 1부

(2) 자격증 사본 1부

5. 연계교육장학금[개정 2019.10.23.]

(1) 연계교육장학금 신청서 1부[개정 2019.10.23.]

(2) 연계고교 확인서(입학원서 확인)[개정 2010.11.25]

6. [삭제 2012.10.10]

7. 만학도장학금

(1) 만학도장학금 신청서 1부

문서번호	GCH-시행세칙-09	장학운영시행세칙	총장
제정일자	2000.03.01.		
개정일자	2022.02.03.		
면 수	15		

(2) 주민등록등본 1부

8. 주부사랑장학금[개정 2010.11.25]

(1) 주부사랑장학금 신청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개정 2010.11.25]

9. 글로벌리더장학금[신설 2010.5.1.][개정 2021.08.19.]

(1) 토익성적표 원본

10. 해외교환학생 장학금[신설 2012.10.10]

(1) 해외교환학생 장학금 신청서 1부

(2) 관련학과 학과장 추천서(선발확인) 1부

11. 학업성적향상장학금[신설 2012.10.10]

(1) 학업성적향상장학금 신청서 1부

(2) 해당학기 성적 증명서 1부

② [삭제 2016.03.01.]

제14조(지급방법) ① 장학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총장의 승인에 의해 선정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법은 등록금 고지서 발송 전에 선감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선감면이 힘든 공로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신입생 대상 장학금, 복학생 대상 장학금은 등록 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공로장학금의 지급방법은 등록 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학기 및 2학기의 지급시기를 달리 한다. 1학기 지급시기는 수업일수 1/3 이내 기간, 2학기 지급시기는 수업일수 2/3 이후 기간이다. 또한, 학생회 임원이 학생회 활동 중 취업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활동을 지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재임기간을 환산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장학금을 이미 지급하였을 때는 반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중 제12조 장학선발제한에 의해 이중수혜될 수 없는 장학대상자는 해당 장학금 중 장학지급액이 큰 한 종의 장학금만 지급한다. 단, 기지급된 장학금이 지급예정인 장학금보다 금액이 적을 경우 기지급된 장학금을 뺀 차액만 지급한다.[개정 2010.11.25]

④ [삭제 2012.03.01]

⑤ [삭제 2012.03.01]

⑥ [삭제 2012.03.01]

⑦ 전문대학성적우수장학금(신입생) 선발기준은 각 호와 같다.[신설 2011.12.01]

1. 당해연도 우리대학 정시모집 일반전형(수능성적반영학생)에 지원, 합격하여 등록한 신입생 중 한국장학재단의 최소성적기준을 충족하며, 입학성적이 가장 우수한 학생순으로 선발한다.

2. 성적우수자는 우리대학 입학총점(800점)을 우선으로 선발하고, 동점자의 경우 수능성적이 높은 자를 우선으로 한다.

문서번호	GCH-시행세칙-09	장학운영시행세칙	총장
제정일자	2000.03.01.		
개정일자	2022.02.03.		
면 수	15		

3. 기타 사항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제시한 주요 선발기준을 적용한다.

⑧ 전문대학성적우수장학금(재학생) 선발기준은 각 호와 같다.[신설 2011.12.01]

1. 현재 우리대학에 재학하고 있는 2, 3학년 학생 중 한국장학재단의 최소성적기준을 충족하며, 직전학기 성적이 가장 우수한 학생 순으로 선발한다.
2. 성적우수자는 평점을 우선으로 선발하고, 동점자가 있을 경우 우리대학 학사내규(39조) 및 장학운영시행세칙에 의거하여 (1) 실질 평균(환산평균)이 높은 자, (2) 총득점이 많은 자, (3) 이수과목의 학점 수가 많은 자를 우선으로 한다.
3. 기타 사항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제시한 주요 선발기준을 적용한다.

⑨ 국가장학금 I 유형 장학생 선발 및 지급.[신설 2012.03.01]

1. 국가장학금 I 유형 선발은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학생 중 저소득층의 등록금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최소한의 성적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계층별로 일정비율을 지원정부가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성적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개정 2013.03.01., 2015.09.01.]

구분	성적 기준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재입학생이 대학성적이 있는 경우 재학생 기준 적용
재학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장애우 학생은 이수학점 제한없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한 자 ○ 소속 대학의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 대학의 학사 규정에 의함
	○ 소득분위에 따른 성적기준 완화 요건은 한국장학재단의 당해학기 업무지침에 따름

2. 국가장학금 I 유형의 지원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의 관련규정에 따른다.[개정 2013.03.01.]

⑩ 국가장학금 II 유형 장학생 선발 및 지급.[신설 2012.03.01]

1. 국가장학금 II 유형 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의 당해연도 선발 및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르되, 대학 별도의 시행세칙을 만들어 운영한다.[개정 2015.09.01.]

⑪ 신입생 및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글로벌리더장학금의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2.10.10.][개정 2016.03.01., 2021.08.19]

1. 직전학기 동안에 취득한 토익성적이 일정수준을 만족하는 재학생에게 지급한다. 단, 신입생의 경우 입학 직전 년도에 취득한 토익성적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16.03.01., 2021.08.19]
2. 글로벌리더장학금 지급액: 취득한 토익성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개정 2014.03.01., 2021.08.19]
 - (1) 토익성적 600점 이상 : 200,000원 지급[개정 2021.08.19.]
 - (2) 토익성적 700점 이상 : 1,000,000원 지급[개정 2021.08.19.]
 - (3) 토익성적 800점 이상 : 1,500,000원 지급[개정 2021.08.19.]
 - (4) 토익성적 900점 이상 : 2,000,000원 지급[개정 2021.08.19.]
 - (5) [삭제 2021.08.19.]
3. 글로벌리더장학금 신청 및 지급과 관련한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개정 2021.08.19.]

문서번호	GCH-시행세칙-09	장학운영시행세칙	총장
제정일자	2000.03.01.		
개정일자	2022.02.03.		
면 수	15		

- (1) 글로벌리더장학금의 신청기간은 매 학기초(개강 후 30일 이내)로 한다. 단, 직전학기에 글로벌리더장학금 또는 토익성적우수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이 다음 학기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15.09.01., 2016.03.01., 2021.08.19]
- 토익성적 900점 미만으로 글로벌리더장학금 또는 토익성적우수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으로서 직전 신청학기보다 토익성적이 100점 이상 향상된 경우
 - 토익성적 900점 이상으로 글로벌리더장학금 또는 토익성적우수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으로서 직전 신청학기보다 토익성적이 향상된 경우
- (2) 매학기 글로벌리더장학금 신청기간 이후에 취득한 토익성적은 다음 학기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1.08.19.]
- (3) 토익성적 우수장학금 지급신청을 위해서는 직전 학기 또는 입학 직전 년도에 취득한 토익성적표 원본을 관련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08.19.]
4. 글로벌리더장학금 운영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개정 2021.08.19.]
- (1) 토익성적은 장학금을 신청하는 직전 학기 중 또는 입학 직전 년도 중에 취득한 성적만을 인정한다.[개정 2021.08.19.]
 - (2) 장학금 신청금액이 글로벌리더장학금 예산총액을 상회하는 경우는 예산범위 내에서 취득한 토익성적이 높은 학생순으로 지급한다.[개정 2021.08.19.]
 - (3) 글로벌리더장학금 예산은 회계년도를 이월하여 누적운영하지 않는다.[개정 2021.08.19.]

제15조(수혜기간) 학비감면 및 장학금의 수혜기간은 별도의 조항이 없는 한 학기 단위로 한다.

제16조(장학금반환) ① 장학금 수혜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는 장학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9.10.23.]

1. 성적장학금 대상자 중 군 입대, 일반휴학으로 당해 학기 미등록자[개정 2010.11.25]
2. 학칙에 의거 징계처분을 받은 자[개정 2019.10.23.]
3. 계출없이 4주 이상 무단결석한 자
4. 장학생 선발과정에서 장학생의 자격이 없는 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인정되는 장학금
5. 기타 교외장학금 지급기관에서 반환 및 행정처분 요청이 있는 자
6. [삭제 2019.10.23.]

② 자퇴, 제적하는 경우에는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교육부령)’에 따라 반환금을 산정한다.[신설 2019.10.23.]

제17조(장학생추천서) ① 외부기관 장학금 수혜를 위해 총장의 장학생 추천서를 요청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10.11.25]

문서번호	GCH-시행세칙-09	장학운영시행세칙	총장
제정일자	2000.03.01.		
개정일자	2022.02.03.		
면 수	15		

1. 추천서 신청일 기준 우리대학에 재학 중이며, 해당학기 등록을 필한 자
 2. 학생 개인의 신상에 징계 등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추천서 요청기관 자격조건에 충족하는 자
- ② 위 ①항의 요건을 충족 시 추천요청기관의 양식에 의거,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득한 후 발급한다. 또한, 추천서대장을 제작, 관리,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0.11.25]

제18조(장학금포기) 제12조 장학선발제한에 의해 이중수혜될 수 없는 장학대상자가 교외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별지서식 제2-14호의 장학금 포기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5]

제19조(장학사정관제)[본조신설 2013.03.01.] 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상담 및 장학금 지원을 위하여 장학사정관을 둘 수 있으며, 장학사정관에 의해 장학금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으로 선발한다.
② 장학사정관은 총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 본 시행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장학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총장의 승인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 본 시행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장학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총장의 승인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 본 시행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장학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총장의 승인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 본 시행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장학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총장의 승인에 따른다.

부 칙

문서번호	GCH-시행세칙-09	장학운영시행세칙	총장
제정일자	2000.03.01.		
개정일자	2022.02.03.		
면 수	15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09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학교의 장 명칭을 학장에서 총장으로 변경 개정, 관련근거: 기획-기획-09-007(2009.02.02)]

제2조(기타) 본 시행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장학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총장의 승인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관련근거: 기획-기획-10-015(2010.04.15)]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0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관련근거: 기획-기획-11-046(2011.11.17)].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관련근거: 기획-기획-12-010].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2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관련근거: 기획-기획-12-055].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관련근거: 기획-기획-13-038].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관련근거: 기획-기획-14-020].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관련근거: 경북보건대-기획-15-020].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관련근거: 경북보건대-기획-16-005].

문서번호	GCH-시행세칙-09	장학운영시행세칙	총장
제정일자	2000.03.01.		
개정일자	2022.02.03.		
면 수	15		

제2조(경과규정) 본 규정은 2015년 8월 24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7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8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19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20년 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20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20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21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시행세칙은 2022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 가계곤란장학금은 2022학년도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지급한다.